

김해시 고시 제 2013 - 140호

진영주호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

김해시 고시 제2013-112(2013.07.04)호로 변경승인·고시한 진영주호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변경(개발실시계획변경)을 승인·고시하며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사항 등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개발과(☎ 055-330-685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토지이용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ct.go.kr>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
2013년 8월 16 일

김 해 시 장

I. 진영 주호일반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 (변경)

1. 산업단지의 명칭 (변경없음)

- 진영 주호일반산업단지

2.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(변경없음)

- 공장용지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한 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
- 본산농공단지 및 본산준공업지구와 연계하여 진영읍 일원의 산업경쟁력 향상과 인프라 확보

3.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(변경없음) 및 면적(변경)

- 위 치 :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174번지 일원
- 면 적 : 기정 - 116,672.1㎡

변경 - 116,695.6㎡ (23.5㎡)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(변경없음)

- 개발기간 : 2009년 ~ 2013년 6월 30일
- 개발방법 : 민간개발방식

5. 주요 유치업종계획(변경없음)

○ 진영주호일반산업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

구 분	면 적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87,170.9	-	-	100	
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	31,941.3	-	-	36.6	
전기장비 제조업(C28)	1,757.9	-	-	2.0	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	23,712.2	-	-	27.2	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	4,493.1	-	-	5.2	
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	5,777.6	-	-	6.6	
복수업종(C25,C28 ,C29,C31)	19,488.8	-	-	22.4	

6. 토지이용계획 (변경) 및 기반시설계획 (변경)

○ 토지이용계획 (변경)

구 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	
	기정	변경	변경후			
합 계	116,672.1	23.5	116,695.6	100.0	(정정)	
산업시설공간	87,170.9	-	87,170.9	74.7		
지원시설공간	5,334.1	-	5,334.1	4.6		
기반 시설 공간	소 계	24,167.1	23.5	24,190.6	20.7	(정정)
	공원	1,792.8	-	1,792.8		
	녹지	6,042.1	-	6,042.1		
	주차장	1,745.5	-	1,745.5		
	유수지	1,752.6	-	1,752.6		
	방수설비	77.4	-	77.4		
	도로	12,756.7	23.5	12,780.2		(정정)

○ 기반시설계획(변경) : 붙임

7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,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·주소(변경없음)

II. 진영 주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(변경)

1. 사업의 명칭 (변경없음)

- 진영 주호일반산업단지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(변경없음)

- 김해상공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강복희

3. 사업의 목적(변경없음) 및 개요(변경없음 : 생략)

- 목적

- 공장용지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한 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
- 본산농공단지 및 본산준공업지구와 연계하여 진영읍 일원의 산업경쟁력 향상과 인프라 확보

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(변경없음) 및 면적(변경)

- 위 치 :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174번지 일원

- 면 적 : 기정 - 116,672.1㎡

변경 - 116,695.6㎡ (23.5㎡)

5. 사업시행기간 (변경없음)

- 개발기간 : 2009년 ~ 2013년 6월 30일

6.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(변경)

-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 : 생략

-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: 생략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)

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

가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1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계	463,329,091.0	-	463,445,763.1	100.0	
주 거 지 역	소 계	31,982,804.8	-	34,816,457.5	7.5
	전용주거지역	-	-	-	-
	제1종전용주거지역	-	-	-	-
	제2종전용주거지역	71,538.0	-	71,538.0	0.0
	제1종일반주거지역	10,840,090.0	-	11,591,931.0	2.5
	제2 일반주거지역	13,772,875.6	-	14,555,169.5	3.1
	제3 일반주거지역	5,625,109.7	-	6,267,040.2	1.4
	준주거지역	1,673,191.5	-	2,330,778.8	0.5
상 업 지 역	소 계	3,713,672.2	-	3,897,926.1	0.8
	중심상업지역	365,880.0	-	365,880.0	0.1
	일반상업지역	3,164,000.2	-	3,315,361.2	0.7
	근린상업지역	183,792.0	-	216,684.9	0.0
공 업 지 역	소 계	8,807,128.0	116,695.6	10,650,546.3	2.3
	일반공업지역	5,382,980.0	107,965.8	72,09,513.5	1.5
	준공업지역	3,424,148.0	8,729.8	3,441,032.8	0.7
녹 지 지 역	소 계	218,443,486.0	-	214,027,665.2	46.2
	보전녹지지역	88,210.0	-	148,990.0	0.0
	생산녹지지역	12,581,367.2	-	9,592,912.2	2.1
	자연녹지지역	205,773,908.8	-	204,285,763.0	44.1
관 리 지 역	소 계	97,504,944.0	-	97,325,727.0	21.0
	관리지역	4,856,541.0	-	4,827,778.0	1.0
	보전관리지역	39,712,513.0	-	39,609,026.0	8.6
	생산관리지역	17,644,431.0	-	17,524,485.0	3.8
	계획관리지역	35,291,459.0	-	35,364,438.0	7.6
농 립 지 역	102,877,056.0	-	102,727,441.0	22.2	

주) 기정은 김해시 고시 제 2012 - 54 호(2012. 3. 29)임

나.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)에 관한 사항(변경)

1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진영 주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174번지 일원	116,672.1	23.5	116,695.6	(정정)

2)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

(가) 용도지역·지구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	면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116,672.1	23.5	116,695.6		(정정)
공업지역	소계	116,672.1	23.5	116,695.6		(정정)
	일반공업지역	107,942.3	23.5	107,965.8		(정정)
	준공업지역	8,729.8	-	8,729.8		

※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반영

- 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 - 해당 없음

다.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관한 사항 (변경)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)

- 도로 결정조서
 - 도로 총괄조서(변경)

유형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	비고
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
합계	8	5,981 (2,049)	101,149 (12,780.2)	4	3,071 (1,109)	58,257 (3,795.4)	3	2,836 (866)	42,345 (8,437.6)	1	74 (74)	547 (547.2)	(정정)
중로	3	4,680 (766)	87,851 (7,623.0)	1	1,949 (5)	46,400 (85.2)	2	2,731 (761)	41,451 (7,537.8)	-	-	-	(정정)
소로	5	1,301 (1,283)	13,298 (5,157.2)	3	1,122 (1,104)	11,857 (3,710.2)	1	105 (105)	899.8 (899.8)	1	74 (74)	547 (547.2)	(정정)

()는 구역내임

- 도로 결정(변경없음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상용 상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1	20	보조 차도	1,949	중로 2-4	중로 2-21	일반 도로	대루 1-1	1977.4.19	구역내 포함 85.2㎡
기정	중로	2	6	15 20	보조 차도	2,360	중로 1-1	중로 1-3	일반 도로	-	1944.3.12	일부구 도로 확폭
기정	중로	2	21	15 18	보조 차도	371	중로 1-1	소로 1-51	일반 도로	-	2010. 4. 1 김해시 고시 제2010-32호	
기정	소로	1	51	10 12	국지 도로	401	소로 2-114	본산리 1190-3	일반 도로	-	2010. 4. 1 김해시 고시 제2010-32호	1~4m 포함
기정	소로	1	52	10	국지 도로	136	중로 1-1	소로 2-114	일반 도로	-	-	구역내 2m 포함
기정	소로	1	53	10	국지 도로	585	중로 2-6	소로 1-51	일반 도로	-	2010. 4. 1 김해시 고시 제2010-32호	2~7m 포함
기정	소로	2	128	8	국지 도로	105	중로 2-21	본산리 1072-3	일반 도로	-		
기정	소로	3	41	6	국지 도로	74	중로 2-21	유수지 5-4	일반 도로	-	2010. 4. 1 김해시 고시 제2010-32호	

• 주차장 결정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5-25	주차장	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05-10번지 일원	1,745.5	-	-	2010. 4. 1 김해시 고시 제2010-32호	

• 녹지 결정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5-45	녹지	완충녹지	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84-3번지 일원	5,736.1	-	-	2010. 4. 1 김해시고시 제2010-32호	
기정	5-46	녹지	완충녹지	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75-17번지 일원	306	-	-	2010. 4. 1 김해시고시 제2010-32호	

• 공원 결정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5-28	공원	소공원	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05-23번지 일원	500.6	-	-	2010. 4. 1 김해시고시 제2010-32호	
기정	5-29	공원	소공원	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44번지 일원	1,292.2	-	-	2010. 4. 1 김해시고시 제2010-32호	

• 유수지계획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5-4	유수지	저류시설	김해시 진영읍 1205-11번지 일원	1,752.6	-	-	2010. 4. 1 김해시고시 제2010-32 호	

• 방수설비계획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5-1	방수설비	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175-7번지 일원	77.4	-	-	2010. 4. 1 김해시고시 제2010-32호	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)

가구 번호	획지번호	면적 (㎡)	획지			비고	
			위치	면적(㎡)			
				기정	변경		변경후
합계			-	116,672.1	23.5	116,695.6	(정정)
A	1	77,852.8	본산리 1179-4번지 일원	2,650.5	-	2,650.5	사업용지 시설용지
	2		본산리 1176번지 일원	5,652.8	-	5,652.8	
	3		본산리 1175-34번지 일원	9,636.1	-	9,636.1	
	4		본산리 1175-15번지 일원	14,275.8	-	14,275.8	
	5		본산리 1075-12번지 일원	4,493.1	-	4,493.1	
	6		본산리 1075-13번지 일원	3,177.1	-	3,177.1	
	7		본산리 1075-16번지 일원	6,259.3	-	6,259.3	
	8		본산리 1075-3번지 일원	19,488.8	-	19,488.8	
	9		본산리 1073-1번지 일원	3,127.1	-	3,127.1	
	10		본산리 1043번지 일원	1,757.9	-	1,757.9	
	11		본산리 1084-3번지 일원	5,736.1	-	5,736.1	완충녹지 5-45
	12		본산리 1075-17번지 일원	306	-	306	완충녹지 5-46
	13		본산리 1044번지 일원	1,292.2	-	1,292.2	소공원 5-29
B	1	26,062.6	본산리 1175-7번지 일원	77.4	-	77.4	방수설비 5-1
	2		본산리 1179-2번지 일원	5,960.4	-	5,960.4	사업용지 시설용지
	3		본산리 1199-5번지 일원	10,692	-	10,692	
	4		본산리 1205-11번지 일원	1,752.6	-	1,752.6	유수지 5-4
	5		본산리 1205-23번지 일원	500.6	-	500.6	소공원 5-28
	6		본산리 1205-4번지 일원	1,328.8	-	1,328.8	지설용지 원지
	7		본산리 1205-10번지 일원	1,745.5	-	1,745.5	주차장 5-25
	8		본산리 1075-18번지 일원	4,005.3	-	4,005.3	지설용지 원지
-		12,756.7	-	12,756.7	23.5	12,780.2	도로 (정정)

(가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- 산업시설용지

도 면 번 호	위 치 (가 구 및 획 지 번 호)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	기 정		기 정	
-	A1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(C31) ·세부배치계획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함 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불허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(단,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지가능)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·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·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시설(단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에는 제외) 	
		건폐율	80 %	
		용적률	250 %	
		높 이	-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축선	-	

(계 속)

도 면 번호	위 치 (가구 및 획지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	
	기정		기정		
-	A2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속가공제 품제조업(C25 단25911~3, 25921~3, 25929는 제외 ·세부배치계획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함 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불허용도 ·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(단,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지가능)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0조에 따 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 한·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·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시설(단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에는 제외) 		
		건폐율	80 %		
		용적률	250 %		
		높 이	-		
		배 치	-		
		형 태	-		
		색 채	-		
		건축선	-		

(계 속)

도 면 번호	위 치 (가구 및 획지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	기정		기정	
-	A3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속가공제 품제조업(C25 단25911~3, 25921~3, 25929는 제외) ·세부배치계획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함 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불허용도 ·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(단,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지가능)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0조에 따 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 한·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·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시설(단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에는 제외) 	
		건폐율	80 %	
		용적률	250 %	
		높 이	-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축선	-	

(계 속)

도 면 번 호	위 치 (가구 및 획지번호) 기정	구 분	계 획 내 용		비 고	
			기 정			
-	A4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C29) ·세부배치계획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함 	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불허용도 ·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(단,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지가능)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0조에 따 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 한·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·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시설(단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에는 제외) 			
		건폐율	80 %			
		용적률	250 %			
		높 이	-			
		배 치	-			
		형 태	-			
		색 채	-			
건축선	·건축한계선 5m (중로2-6호선변)	-	도면 참조			

(계 속)

도 면 번 호	위 치 (가 구 및 획 지 번 호) 기 정	구 분	계 획 내 용		비 고	
			기 정			
-	A5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(C30) ·세부배치계획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함 	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불허용도 ·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(단,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지가능)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0조에 따 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 한·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·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시설(단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에는 제외) 			
		건폐율	80 %			
		용적률	250 %			
		높 이	-			
		배 치	-			
		형 태	-			
		색 채	-			
건축선	·건축한계선 5m (중로2-6호선변)	-	도면 참조			

(계 속)

도 면 번 호	위 치 (가구 및 획지번호) 기정	구 분	계 획 내 용		비 고	
			기 정			
-	A6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C29) ·세부배치계획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함 	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불허용도 ·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(단,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지가능)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0조에 따 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 한·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·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시설(단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에는 제외) 			
		건폐율	80 %			
		용적률	250 %			
		높 이	-			
		배 치	-			
		형 태	-			
		색 채	-			
건축선	·건축한계선 5m (중로2-6호선변)	-	도면 참조			

(계 속)

도 면 번 호	위 치 (가구 및 획지번호) 기정	구 분	계 획 내 용		비 고	
			기 정			
-	A7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C29) ·세부배치계획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함 	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불허용도 ·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(단,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지가능)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0조에 따 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 한·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·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시설(단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에는 제외) 			
		건폐율	80 %			
		용적률	250 %			
		높 이	-			
		배 치	-			
		형 태	-			
		색 채	-			
건축선	·건축한계선 5m (중로2-6호선변)	·건축한계선 2m ~ 5m (중로2-6호선변)	도면 참조			

(계 속)

도 면 번 호	위 치 (가구 및 획지번호) 기정	구 분	계 획 내 용		비 고	
			기 정			
-	A8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속가공제 품제조업(C25 단25911~3, 25921~3, 25929는 제외) 전 기장비제조업(C28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C29), 기타 운송장비제조업(C31) ·세부배치계획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함 	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불허용도 ·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(단,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지가능)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0조에 따 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 한·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·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시설(단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에는 제외) 			
		건폐율	80 %			
		용적률	250 %			
		높 이	-			
		배 치	-			
		형 태	-			
		색 채	-			
		건축선	·건축한계선 5m (중로2-6호선변)	·건축한계선 1.75m ~ 5m (중로2-6호선변)		도면 참조

(계 속)

도 면 번 호	위 치 (가구 및 획지번호) 기정	구 분	계 획 내 용		비 고	
			기 정			
-	A9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운송장 비제조업(C31) ·세부배치계획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함 	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불허용도 ·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(단,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지가능)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0조에 따 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 한·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·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시설(단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에는 제외) 			
		건폐율	80 %			
		용적률	250 %			
		높 이	-			
		배 치	-			
		형 태	-			
		색 채	-			
건축선	·건축한계선 5m (중로2-6호선변)	·건축한계선 1.75m (중로2-6호선변) ※ 단 획지진입을 위한 6m구간 제외	도면 참조			

(계 속)

도 면 번 호	위 치 (가구 및 획지번호) 기정	구 분	계 획 내 용		비 고	
			기정			
-	A10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기장비제 조업(C28) ·세부배치계획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함 	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불허용도 ·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(단,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지가능)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0조에 따 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 한·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·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시설(단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에는 제외) 			
		건폐율	80 %			
		용적률	250 %			
		높 이	-			
		배 치	-			
		형 태	-			
		색 채	-			
건축선	·건축한계선 5m (중로2-6호선변)	·건축한계선 1.75m (중로2-6호선변) ※ 단 획지진입을 위한 6m구간 제외	도면 참조			

(계 속)

도 면 번호	위 치 (가구 및 획지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	
	기정		기정		
-	B2 B3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속가공제 품제조업(C25 단25911~3, 25921~3, 25929는 제외) ·세부배치계획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함 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불허용도 ·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(단,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지가능)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0조에 따 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 한·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·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시설(단,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에는 제외) 		
		건폐율	80 %		
		용적률	250 %		
		높 이	-		
		배 치	-		
		형 태	-		
		색 채	-		
건축선	·건축한계선 3m (소로 1-51호선변)	도면 참조			

나) 지원시설용지

도 면 번 호	위 치 (가 구 및 획 지 번 호)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	기 정			
-	B6 B8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김해시 도시계획 조례」 상 준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· 세부배치계획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함 ◦ 불허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허용용도 중 공장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단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), 단독주택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불허 	
		건폐율	80 %	
		용적률	250 %	
		높 이	-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축선	-	

다) 주차장

도 면 번 호	위 치 (가 구 및 획 지 번 호)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	기 정			
-	B7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주차장법」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) ◦ 불허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정용도 외의 용도 	
		건폐율	80 %	
		용적률	250 %	
		높 이	-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건축선	-	